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4년 9월 일 (제334회)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우양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4년 9월 일

#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우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4년 9월 일

발 의 자 : 박우양·이양섭·김학철·김인수·  
이의영·황규철·김봉희 의원(7명)

## 1. 제안 이유

-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안 제1조, 안 제3조 ~ 안 제7조)

3. 조례안 : 불 입

4. 관계법령 발췌 : 불 입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와 협의

7. 입법예고사항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 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

##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 충청북도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제3호 그리고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물품 등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등을 사용할 때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의 책무) 도는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해의 방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도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도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 충청복도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도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생 략)</p> <p>제3조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p> <p>1. (생 략)</p> <p>2. <u>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u></p> <p>3. <u>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 충청복도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비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현행과 같음)</p> <p>제3조 (소비자의 권리)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물품 등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u></p> <p>3. <u>물품 등을 사용할 때 거래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u></p>

현행	개정안
<p>4. (생략)</p> <p>5. <u>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u></p> <p>6. ~ 8. (생략)</p>	<p>4. (현행과 같음)</p> <p>5. <u>물품 등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u></p> <p>6. ~ 8. (현행과 같음)</p>
<p>제4조 (도의 책무) 도는 제3조의 <u>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u></p> <p>1. ~ 3. (생략)</p>	<p>제4조 (도의 책무) 도는 제3조의 <u>규정에서 정한 소비자의 기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해의 방지)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u>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u></p>	<p>제5조(위해의 방지)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u>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검사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1. ~ 3. (생략)</p> <p>제6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생략)</p> <p>② <u>도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제7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 ③ (생략)</p> <p>④ <u>도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u></p> <p>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은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6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도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u></p> <p>제7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도는 소비자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을 할 수 있다.</u></p> <p>⑤ <u>도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u></p>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